

17.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방안

자료제공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 문 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설관리연구그룹 그룹장)

이 자료는 지난 7월 22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최한 「건설사업 관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문입니다. <편집자주>

I. 건설사업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

1.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배경

- 국내에 건설사업관리의 개념이 소개된 것은 '70년대 해외건설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정부내에서는 '90년대 전후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수립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80년 중반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90년대초에 착공된 신공항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하여 공기, 예산, 품질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의 전문사업관리업체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되었으며 '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사업관리가 제도화되었음.

2. 건설사업관리제도 운영현황

-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는 법 제정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세부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책임감리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의 미비로 책임감리와의 혼합된 형태로 발주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

- 현행 건설사업기본법의 건설사업관리 규정 및 계약 현황

(제2조 제6호)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건축사·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 ③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표 1)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이후 건설사업관리 용역발주 현황

사업명	발주청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의 성격	건설사업 관리자
남원원료 공장 현대화사업	한국담배 인산공사	1999.1 ~ 2001. 4	1,500,000	책임감리+전력시설물감리+소방감리+사업관리	현대건설, POSAC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서울시	1998.9 ~ 2002. 4	4,390,000	설계감리+책임감리+전력시설물감리+소방감리+정보통신 공사감리+사업관리	한미건설, 건 원, 유신건축, 유신 Corp, 창 목건축
광주 월드컵 경기장	광주시	1998. 11 ~ 2002. 3	2,179,688	상동	현대건설, POSAC, 전원주택
전주 월드컵 경기장	전주시	1998. 12 ~ 2002. 4	3,890,000	상동	토문Eng, 동일기술공사, 동일건축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서귀포시	1999. 1 ~ 2002. 4	3,237,710	상동	현대건설, POSAC, 청화감리공단

3.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기법 개정의 필요성

- 현재까지 건설사업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주요 내용은,
 - 건설사업관리자의 정확한 역할과 업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발주자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 부진
 - 세부운영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인식의 부재로 혼란초래 및 이로 인한 업계의 대응부재
 - 건설사업관리와 현행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와의 상호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단지 책임감리와 유사한 개념의 혼용으로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왜곡 심화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대가는 책임감리대가 수준 또는 미달로 유명무실한 건설사업관리 운영
- 이와같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제도”는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제도의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활성화되지도 못하는 실정
- 현재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제각기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기반을 마련

II.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향

1. 기본목표

1)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선도적 정착

-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우선 정착하여 점차적으로 민간 건설부문으로 확산 유도
- 공공부문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 활성화 유도 및 발주방식 다양화
 - 신공항·고속철도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 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기타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판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 체제 구축

2)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화

- 투명하고 철저한 공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 공공사업효율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건설공사시행 기반 구축
-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품질뿐만 아니라 비용,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 공사관리체계 구축

3) 민간부문의 기술력 제고 및 공공부문에 민간 기술력 활용

-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기반구축
 - 선진국에 비해 낙후·정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기술수준 제고
 - 선진국 대비 '93년 65% 수준, '97년 67% 수준
 - 엔지니어링 및 종합 사업관리 기술력 제고를 통한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
- 합리적·과학적 공사관리체계 도입으로 선진 건설공사관리기법의 정착
 -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우수한 민간전문인력의 참여로 효율적인 비용·시간·품질 관리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

2.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기법 개정방향

1)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사업관리체계내에서 공공건설 사업수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사업관리 정의
 -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조달, 계약, 설계 및 시공(감리를 포함한다), 평가를 포함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로 정함

2)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하여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업역을 신설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 기술력을 갖춘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진입 규제 최소화
 - 건설사업관리자는 개별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시공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건설공사관련 용역업체로 규정
- 다만, 현행 설계감리와 책임감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범위에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규정

- 1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이 자체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및 업무위탁

- 현행 책임감리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 구축
- 다만, 건설사업관리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제시
 - ① 대규모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종합적인 관리업무가 필요한 공사
 - ② 공기단축의 필요성이 높은 공사
 - ③ 공사의 특성상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공기지연 등이 예상되어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공사관리가 필요한 공사
 - ④ 설계 및 시공의 난이도가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등
 - 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공사

4) 책임감리제도와의 관계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 책임감리, 기타 타법에 의한 감리 대상공사일 경우
 - 발주청은 반드시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타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발주청은 개별법에 의한 감리를 통합하여 일괄수행하므로써 통합감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3. 외국 유사 제도와 비교

- Project Management (PM)
 -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를 포함한 초기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합적 관리활동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정의하고 있는 포괄적업무범위와 유사
- Construction Management (CM)
 - 주로 설계·시공단계에서 비용, 시간, 품질을 종합관리하는 활동으로 국내 「책임감리」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책임감리가 품질위주의 단순공사관리체제인데 반하여 CM은 보다 포괄적이며 능동적인 사업관리 활동
- Design/Engineering Management
 -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 결과물인 조사, 설계, 시방서 등의 품질과 이와 관련된 비용, 시간, 구매업무 등에 대한 관리활동
 - 건설법상의 「설계감리」와 유사하나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임
- Program Management
 - 대형 복합공종의 공사 또는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관리활동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 관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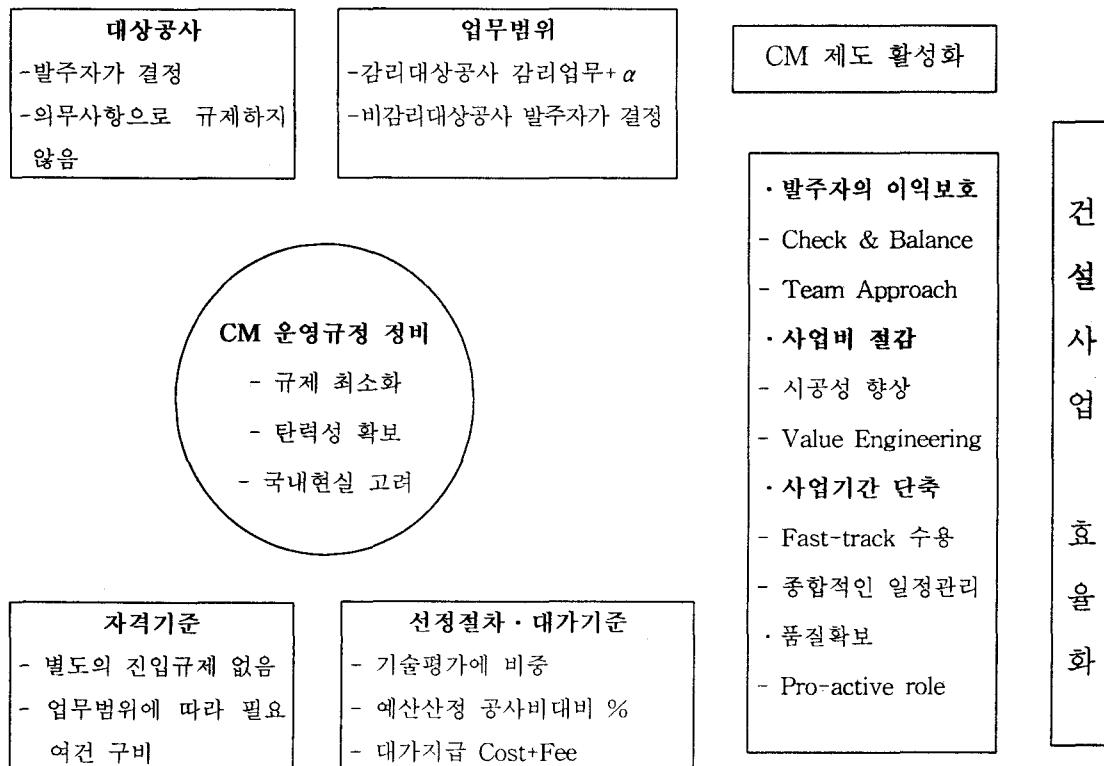
4. 기대효과

-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 유도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등 건설사업 참여주체의 업무를 관리·조정·통합하므로써 생산성 극대화
 - 품질뿐만 아니라 비용, 시간 등 사업수행 전반의 효율에 대한 관리를 통해 발주자의 이익 확보
 - 설계와 시공단계에서의 전반적인 공정을 통합관리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설계와 시공을 중첩시키는 Fast-track 체계주도
 - 사업초기단계의 VE실시,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효과 극대화
- 기존 건설주체들의 기술력·경쟁력 제고
 - 시공회사
 - 설계단계에서 제안된 VE결과와 시공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설계변경, 클레임 등의 조기 해결이 가능한 환경으로 사

업위험 저감

- 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
 - 합리적인 설계 · 엔지니어링 용역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설계품질의 향상과 시공분야와의 교류를 활성화 가능
- 감리회사
 - 단순한 공사관리 기능에서 선진화된 종합관리 역할 가능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개선
 - 건설관련 주체들이 종합관리능력을 배양하므로써 종래의 매출액 위주의 경영방식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 발전기대

건설사업관리제도 정비의 목표 및 기본골격



III.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업무

1. 기본방향

- 사업수행 전단계를 포함하는 업무범위 설정
 -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등 사전단계가 사업시행 결정 이전에 미리 결정되는 공공 건설사업의 특성상 예산 배정단계까지는 건설사업관리자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 건설사업관리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선정하여 참여하도록 규정
- 발주방식 및 사업목표에 따라 발주청이 CM업무범위의 선택적용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시공분리발주 공사나 턴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범위는 발주청의 사업목표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
-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기존 감리업무의 차이
 - 품질관리 중심의 현행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에 비하여 사업비, 시간, 품질 등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화는 공사관리체제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 설정

(표 2) 기존 감리업무와 사업관리업무 비교

구 분	설계감리업무	책임감리 업무	사업관리 업무
설계 초기 단계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발주자가 제시한 기획안 및 타당성 검토 결과의 검토 및 제안2. 각종 설계자입찰문서의 작성지원 및 조언3. 설계 및 시공단계의 마스터 스케줄 작성4. 단계적 시공발주방식의 경우, 설계 및 시공패키지 체계 결정5. 설계 및 시공관련 정보관리체계 수립

구 분	설계감리업무	책임감리 업무	사업관리 업무
설계 단계	1. 계획, 조사, 설계등 이 건설공사설계기 준 및 건설공사시 공기준등에 부합하 는지의 검토 확인 등, 설계감리업무에 근한 업무수행	-	1. 설계안에 대한 VE 및 시공성 검토 제안 2. 설계진도 확인 3. 공사비 적산 및 적정성 검토· 조정 4. 시공자입찰관련 각종 문서 작성 지원 및 조언
시공 단계	-	1. 책임감리 업무에 준한 업무 수행	1. 필요시 시공자들간의 조정업무 2. 타 부문 감리자들과의 조정업무 3. 변경사항에 대한 영향 검토 4. 클레임 및 분쟁 관리 및 조치 5. 시공법, 시공절차 등에 대한 기 술조언
시공 후 단계	-	1. 책임감리 업무에 준한 업무수행	책임감리 업무내용과 유사

※ 이 표에 제시된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단계 업무내용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감리 업무수행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자의 업무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사항 중 중요한 내용만을 기술한것임

2. 사업단계별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 업무

- 건기법상의 업무범위(안)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류하여 사업관리일반,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환경관리, 안전관리, 계약/클레임관리, 구매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공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7개 부문에 관련된 업무로 규정함.

- ① 사업수행체계 · 절차 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 운영 · 조치 등에 관한 사업관리일반 업무

- ② 사업단계별 사업예산 검토 및 사업비 운영·조치 등에 관한 사업비관리업무
- ③ 사업단계별 일정계획의 수립·운영·조치 등에 관한 공정관리 업무
- ④ 설계 및 시공 결과물의 품질확보와 환경기준 부합여부와 관련된 품질/환경관리업무
- ⑤ 재해예방 및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업무
- ⑥ 설계자, 시공자 선정, 각종 설계변경, 클레임 및 분쟁 등에 관한 계약/클레임 관리 업무
- ⑦ 설계, 시공관련 각종 사업정보관리업무
- 사업단계별 세부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는 위의 7개 기본업무를 중심으로 [표-3]와 같이 구성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필요할 경우 이를 가감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계약서 또는 계약조건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 명시하여 적용하도록 함.

(표 3)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범위

구 분	사업관리 일반	사업관리	공정관리
기본설계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사업관리계획 (Projcct Managcmcnt Plan) 수립 · 설계 용역 발주 및 시공발주 방식 검토 · 기본설계 설계관리 체제 및 절차 수립 · 기본설계 설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산 검토 및 조언(Cost Planning) · 자금수지(Cash Flow)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 공정계획 수립 · 기본설계 공정 모니터링 및 조언 · 마스터 공정표 및 마일스톤 공정표 작성
실시설계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사업관리계획 수정 및 보완 · 실시설계 설계관리체계 및 절차 수립 · 실시설계 설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산 검토 및 조언 · 실시설계 단계 원가계획 · 자체, 장비, 시스템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공정계획수립 · 실시설계 공정모니터링 및 조언 · Long-lcad itcm 공정 관리

구 분	사업관리 일반	사업관리	공정관리
		한 등의 비용 및 일정 영향 평가 · 예정가격 검토 · VE 업무 주관 · 자금수지계획 수정 및 보완	· 마스터 공정표 및 마 일스폰 공정표 수정 및 보완
조달계약 단 계	· 입찰 · 계약 및 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 입찰가격 평가	
시공단계	· 종합사업관리계획 수 정 및 보완 · 시공관리체계 및 절차 수립 · 시공관리 · 시공계획의 검토	· 사업비 예산 검토 및 조언 · 사업비 예산 대비 집 행액 평가 및 잔여 사 업비 예측 · 기성관리체계 수립 및 기성관리업무 지원 · 자금수지계획 수정 및 보완	· 시공 공정계획 검토 및 조정 · 시공 공정 모니터링 및 조언 · 마스터 공정표 및 마 일스톤 공정표 수정 및 보완 · 공정표의 검토
준공 및 인수 인계 단 계	· 준공 및 인수인계 업 무 관리체계 및 절차 수립 · 준공 및 인수인계 지 원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등(*)등 정산 관련 업무 지원 ·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업무 지원 및 검토	· 최종기성관리업무 지 원	

구 분	품질/환경관리	안전관리	계약/클레임관리	계약/클레임관리
기본설계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 사업요구사항 (Client's Brief)파악 및 문서화 기본설계 과업지시서 이행여부 검토 및 조언 설계감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관련 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설계, 사업정보관리
실시설계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이행여부 검토 및 조언 시공성 검토 주관 및 조언 환경 관련 제기준 실시설계 반영 여부 검토 설계감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관련 제기준 반영여부 검토 및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설계 사업정보관리
조달계약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 계약정보 관리
시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보증 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등 책임감리 업무 중 품질관리 관련 업무* 환경관리계획 및 이행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 관리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등 클레임 관리체계 수립 및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사업 정보 관리
준공 및 인수인계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 및 인수인계 정보관리

* 표는 건기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감리업무

3. 사업참여자간 역할분담

-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자, 설계자, 도급자 등 사업참여자간에 명확한 역할분담과 상호 협조관계가 조성되도록 함
-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수행중에 설계자, 도급자 등 사업참여자들을 조정·통제·지시하여 요구되는 품질을 달성하고 적정한 공기와 사업비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역할을 함
- 설계자 및 발주자의 역할
 - 설계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VE 및 설계기준 및 시공성검토 내용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발주자는 그가 검토, 확인, 승인 및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
- 사업관리자와 시공회사와의 관계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회사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IV. 건설사업관리 대가

1. 기본방향

- 적정한 용역대가 기준설정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적정 용역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인 설계·책임감리업무와 추가업무를 감안하여 현행 설계·책임감리 대가수준 및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추가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및 제경비 등 소요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한 사업관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대가기준 마련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과정에서 적정 가격경쟁체제 확보
 - 가격경쟁 요인을 최소화하여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낙찰로 초래되는 부실한 건설사업 관리 방지

2.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 건설사업관리 발주공사의 사례
 - 기 시행된 상암동 등 4개 월드컵 축구경기장 및 담배인삼공사 남원공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분석결과 예정가격산정은 책임감리대가 수준으로 산정되었음
 - 또한 대가지급은 실비정액방식에 의하여 투입된 인원의 등급별 단가에 따라 실투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현행 책임감리 대가수준으로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정한 용역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
 - 미연방조달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역무범위에 따라 예정공사비 대비 2.6~8.8% 정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3. 대가산정 및 지급기준 수립방향

- 기본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대가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를 근거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감안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대가산정방식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은 총공사비 대비 요율에 의한 방식과 정액적산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업무범위에 따라 설계·책임감리에 해당하는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설계·책임감리 대가 수준을 지급하고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대가 수준으로 지급
- 대가지급방식
 - 계약이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대가 지급방법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투입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실비정액정산 방식(Cost Plus Fee)을 적용도록 함.

V.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1. 기본방향

-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요건의 최소화
 - 건설사업관리는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부문의 종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 업무에 대해 능력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면허나 자격을 신설하지 않도록 함.
 - 또한 책임감리와 마찬가지로 정부투자기관 등과 같이 해당 사업에 대해 자체 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기술력 등으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자체의 소속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위탁으로 발주청이 직접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철저하고 엄격한 기술평가를 통한 사업관리자 선정체계 확립
 - 건설사업관리자의 적정한 사업관리능력이 사업을 수행에 근간이 되므로 가격경쟁보다는 기술능력평가 등을 통한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도록 규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 해당사업의 실적·경험 및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관리 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유도
 -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향후 건설산업계의 기술력 향상 및 기술인력 육성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마련
 - 국내 건설사업관리 시행경험이 일천하여 건설사업관리경험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해당사업의 전반적인 수행실적, 수행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 건설사업관리 정착단계에 가서는 실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실적 및 기능별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등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
- 건설사업관리자의 지도감독
 - 건설사업관리자의 수행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쉽지는 않지만 당초 사업목표에 달성을도를 발주청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차기 사업의 참여평가시 반영

2.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절차

-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기본방향은 가격경쟁에 의한 방법보다는 사업수행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절차 마련
 - CM업체의 선정은 기술인력 보유현황, 유사용역실적등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계획, 방법등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가격경쟁을 도입한 종합적 평가 필요
 - 현행 건기법의 용역업체 선정규정에 따라 PQ+TP에 의한 적격 심사방법 또는 기술자격분리입찰방법으로 CM업체 선정

VI. 추진과제 및 향후 추진일정

1. 추진과제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설정방향과 제도 운영방

향을 제시

- 건설사업관리 관련규정의 관련법령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용역형 사업관리체제인 CM for Fee 방식 도입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세부적 운영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정비
 - 건설사업관리자 세부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모델
 - 건설사업관리 표준계약서 및 업무수행지침서
 - 공사비-공정 통합관리(계획-실적관리) 모델
- 또한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건설사업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 건설사업관리 시행초기에는 업체간 제휴, 외국 전문기술의 활용 등을 유도하여 국내업체의 사업관리 수행능력 제고 유도

2. 추진일정

- '99. 7 : 건기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98. 8 : 입법예고
- '99. 10 : 건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 '99. 12 : 건기법 개정